

개인정보보호 월간동향분석

2024년 7월호





| CONTENTS |

2024년 7월호

- 애플의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 및 EU 규제 이슈 분석
- 2 EU 기본권청, DPA의 GDPR 집행 이슈 및 모범시례 공개



빅테크

애플의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 및 EU 규제 이슈



[목 채]

- 1. 개요
- 2. 애플의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 및 EU 규제 이슈
 - (1) 애플의 기존 개인정보보호 정책
 - (2) 애플의 최신 AI 기능 '애플 인텔리전스'의 주요 특징
 - (3) DMA와의 충돌 및 애플의 대응
- 3. 결론
- 1. 개요
- 최근 애플(Apple)은 다양한 AI 기능을 제공하는 '애플 인텔리전스(Apple Intelligence)'를 공개하고,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EU 지역에서의 서비스 제공은 보류한다고 결정
 - 애플은 지난 6월 10일 '24년 세계개발자컨퍼런스(Worldwide Developers Conference; 이하 WWDC)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첫 번째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
 - 애플 인텔리전스는 자사 기기인 아이폰, 맥, 아이패드 등에 적용되어, 저장된 정보를 활용해 대화의 맥락을 확인하고 다양한 요청을 처리하는 개인화 AI 기능을 제공하며, OpenAI의 ChatGPT를 접목한 자사의 음성 비서 '시리(Siri)'에 더 복잡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함
 - 애플 인텔리전스(베타 버전)은 올해 가을 iPhone 15 Pro, iPhone 15 Pro Max, M1 이상 칩 탑재 iPad와 Mac에서 시리와 기기 언어를 '미국 영어'로 설정한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제공될 예정(해당 조건을 만족한 경우,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 다만 애플은 6월 24일 성명을 통해 올해 출시 지역에서 EU를 제외할 것이라고 발표
- 애플은 EU 규제 준수에 대한 우려를 밝혔으며, 이 같은 결정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규제 강화와 기술 혁신 촉진 간 논란이 재점화
- 애플은 EU 지역 출시 연기의 주된 이유로 EU의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 이하 DMA)의 규제 준수 문제를 지적
- 이번 결정은 DMA와 같은 엄격한 규제가 애플과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의 접근 방식을

재고하도록 하는 효과를 보였다는 평가와 함께 기술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EU가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는 위험성을 높인다는 우려를 제기

2. 애플의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 및 EU 규제 이슈

(1) 애플의 기존 개인정보보호 정책

■ 애플은 개인정보보호를 기업의 주요 가치로 내세우고 있으며, 다양한 기능과 기술을 통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

- 애플은 사용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온디바이스(on-device) 처리*, 투명성 및 제어 권한, 데이터 수집 최소화, 보안 강화의 네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설계하고,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다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 *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자 기기 내에서 처리하는 방식
- (데이터 수집 최소화) 애플은 데이터 수집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수집된 데이터를 기기 내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도입해 사용자 정보를 외부로 노출하지 않음
- 앱 사용 시 저장되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사용자 기기 내에서만 처리되도록 하고, 개인정보수집 문제를 고려해 제품 및 서비스 이용 내역 등의 개인정보 프로필을 보관하지 않음
- (앱 개인정보보호 리포트) 사용자는 앱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를 통해 특정 앱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음
- 이 리포트는 앱의 개인정보 접근 여부 및 빈도수를 보여주며, 기기에만 저장되어 사용자가 원할 때 삭제 가능
- (차분 프라이버시 기술) 애플은 서버로 전송해야 하는 경우에도 개별 사용자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분 프라이버시(differential privacy) 기술을 도입
- 통계적 노이즈를 추가하여 개별 사용자의 식별을 방지하는 기술로, 이 기술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제한된 접근 환경에서 처리되며. 데이터 보관 기간도 최대 3개월로 제한

■ 업계에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선도하고,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관한 대중적 인식을 고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 '20년 애플은 아이폰의 사생활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책'을 발표하며 앱 개발자가 데이터를 추적하고 수집하는 방식에 관해 아이폰 및 아이패드 사용자에게 더 많은 통제권을 주겠다고 약속
- '21년 iOS 14.5부터 사용자가 웹사이트나 앱의 개인정보수집 허용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앱 추적 투명성(App Tracking Transparency; ATT)' 기능을 제공

- 기존에는 사용자가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설정을 하지 않으면 앱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에 내장된 고유 식별자에 접근하여 사용자의 방문 이력 등을 수집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채택
- 새로운 정책 도입 이후에는 단말 사용자가 앱 사용을 시작할 때 해당 앱의 개인정보 추적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묻고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옵트인(opt-in)' 방식으로 변화
- 무분별한 사용자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공유에 대한 정보 주체의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으며, 해당 기능 제공 후 앱 추적을 거부한 미국 이용자가 96%에 달한다는 분석이 보도됨

(2) 애플의 최신 AI 기능 '애플 인텔리전스'의 주요 특징

■ 애플 인텔리전스는 애플 기기에 적용되는 모든 종류의 생성형 AI 기능에 대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개별 AI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필요성이 감소

- 애플은 한동안 자사 출시 기기에 AI 연산에 주로 활용되는 신경망 처리 장치(Neural Process Unit; NPU)를 탑재해왔으나, 지금까지 실제로 기기에서 사용 가능한 AI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지는 못함
- 이번 WWDC 2024에서 발표된 애플 인텔리전스는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맥, 맥북에 이르기까지 자사의 기기에 다양한 생성형 AI 기능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
- 애플 인텔리전스는 그 자체로 제품이나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며 애플 인텔리전스가 지원되는 제품에서 시스템 전체에 걸쳐 AI 기능을 제공
- 사용자들은 애플 인텔리전스를 활성화하는 데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고 OpenAl의 ChatGPT나 마이크로소프트의 Copilot 등과 같은 개별적인 Al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필요성이 줄어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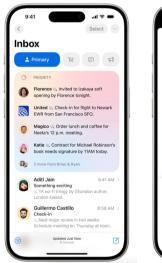
■ 공개된 주요 기능으로 통합된 쓰기 도구, 우선순위 메시지 및 스마트 답장, 오디오 녹음, 전사, 요약,이미지 생성, 사진 검색 및 정리, 새로운 시리(Siri) 기능 포함

- (통합된 쓰기 도구) 사용자가 생성형 AI 기반 쓰기 도구(Writing Tools)를 사용하여 글을 쓸 수 있는 대부분의 자체 및 타사 애플리케이션에서 다시 쓰기(rewrite), 교정, 요약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작성한 텍스트의 여러 가지 버전 중에서 대상과 작업에 맞게 어조를 조정할 수 있고, 요약

도구(The Summarize tool)는 텍스트를 분석해 간단한 문장이나 표로 정리할 수 있음

- (우선순위 알림) Mail 앱 사용자를 위한 우선순위 메시지(Priority Message)는 Al를 사용하여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이메일을 먼저 파악하여 표시하며, 아이폰 알림 기능에서도 가장 중요한 알림을 구분할 수 있음
- 받은 편지함 보기(inbox view)에서 사용자는 메시지를 열지 않은 상태에서 몇 줄의 미리보기가 아닌 이메일 내용의 요약을 볼 수 있음
- (스마트 답장) 스마트 답장(Smart Reply)은 AI가 메시지의 문맥을 이해하고 자동으로 생성된 답장을 제안해 탭 한 번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함

그림1 애플 인텔리전스 주요 기능 사용 예시







주: (왼쪽) 우선순위 알림 기능, (중간) 스마트 답장 기능, (오른쪽) 젠모지(Genmoji) 생성 기능출처: Apple Newsroom (2024)

- (오디오 녹음, 전사, 요약) 통화 중 녹음을 시작하면 당사자 모두에게 자동으로 녹음 사실이 알려지고, 통화를 마치면 AI가 통화 내용의 주요 요점을 요약해서 제공
- (이미지 생성)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Image Playground)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AI가 생성한 애니메이션, 일러스트레이션, 스케치 스타일의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고, 메시지를 포함해 플랫폼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음
- 생성형 AI를 통해 자신, 친구, 가족 등의 맞춤형 이모티콘을 만드는 젠모지(Genmoji)

기능도 사용 가능

- (사진 검색 및 정리) AI를 활용한 고급 검색 기능으로 훨씬 더 편하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검색할 수 있고, 이미지에서 원하지 않는 요소를 선택해 제거 가능
- 자연어를 사용하여 특정 색깔 옷을 입고 특정 행동을 하고 있는 대상을 찍은 사진, 동영상 내 순간을 찾을 수 있음
- Clean Up 도구를 사용해 피사체를 변경하지 않고 사진의 배경에서 삭제하기 원하는 물체를 식별하여 제거 가능
- (새로운 시리(Siri)) Al를 통해 언어 이해 능력이 향상된 시리(Siri)는 사용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문맥을 이해하여 상황에 맞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
- 사용자가 대화 도중에 말실수를 해도 알아듣고, 대화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됨으로써 후속 질문을 할 수 있음
- 시리와 목소리로 대화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말을 하지 않고 타이핑 또는 탭하기 등을 통해서도 시리에게 요청을 전달 가능

▮ OpenAl의 ChatGPT 기술을 통합하여 시리(Siri)와 운영 체제를 강화

- 자사 제품을 엄격하게 보호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애플은 AI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OpenAI의 ChatGPT 기술을 플랫폼 전반에 통합
- 사용자는 아이폰 및 맥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면 계정을 만들지 않고도 무료로 ChatGPT를 활용할 수 있고, 텍스트 및 콘텐츠 생성을 포함하여 다른 도구를 강화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게됨
- 시리는 도움이 될 때 ChatGPT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시리가 답변하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보완책으로 활용
- 시리는 ChatGPT와 쿼리(query)를 공유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ChatGPT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고, 처리 결과를 제시
- 애플은 ChatGPT 이외에도 타사 AI 모델을 통합할 계획을 보유하고 있고, 구글의 제미나이 (Gemini), AI 스타트업 앤스로픽(Anthropic)의 클로드(Claude) 등과 협력을 논의 하고 있다고 알려짐
- 한편, 시장에서는 애플과 OpenAl와의 협력이 애플 사용자 정보에 관한 보안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의견도 존재
- 애플은 사용자 IP 주소가 가려지고, OpenAI는 애플 제품을 통해 들어오는 요청을 저장하지 않는 등 ChatGPT에 접근하는 사용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내장하고

있다고 주장

■ 애플은 온디바이스(on-device) 처리 원칙 및 비공개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높은 성능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AI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정립

- 애플 인텔리전스는 개인용 AI 시스템으로서 사용자의 개인적인 상황 및 맥락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애플 인텔리전스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온디바이스 처리, 비공개 클라우드 컴퓨팅, 암호화 보안, 독립적인 검증, 개인정보 최소화 조치를 수행
- (온디바이스 처리) 기본적으로 생성 AI 작업에 관한 모든 처리는 온디바이스를 원칙으로 함
- 온디바이스 처리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고도 개인용 AI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본 원칙으로서 통화 내용 기록 및 일정 정리와 같이 사용자가 원하는 일반적인 AI 작업은 기기 내에서 처리
- 애플은 기기에서 작동하는 AI 모델을 유용하게 만들기 위해 미세 조정(fine-tuning)*을 사용하여 특정 작업(텍스트 교정 또는 요약 등)에 더 잘 대처하도록 훈련
 - * 미세 조정은 기계 학습에서 미리 학습된 모델의 매개변수를 특정 작업이나 데이터 세트에 더 잘 맞도록 조정하는 작업을 의미
- 이와 같이 AI 요청을 온디바이스로 처리하는 것은 많은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작고 성능이 떨어지는 모델을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
- 따라서 기본 원칙은 온디바이스 처리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컴퓨팅 성능을 조정 및 확장할 수 있는 대규모 서버 기반 모델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이중적 접근 방식을 취함
- (비공개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자 기기 성능을 초과하는 복잡한 요청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용 AI 처리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트(Private Cloud Compute; PCC)'를 활용
- PCC는 애플의 운영체제인 iOS를 기반으로 하는 자체 OS에서 실행되며, 애플 인텔리전스를 구동하는 자체 머신러닝 스택(stack)을 보유
- 기기는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자 정보를 PCC로 전송하고, PCC는 또한 사용자가 요청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해당 정보를 사용
- 사용자 정보는 요청을 처리한 후에 PCC에서 삭제되며, 어떤 형태로든 사용자 정보를 보관하지 않고, 사용자 이외 애플을 포함한 어느 누구라도 사용할 수 없음*
 - * 애플의 사이트 안전성 담당자가 가동 중단 또는 기타 심각한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작업하는 경우에도 PCC 개인정보보호 보장을 우회할 수 있는 권한있는 인터페이스가 포함되어서는 안됨



- (암호화 보안) 애플 인텔리전스는 사용자 기기에서 검증된 PCC 노드까지 전달되는 정보를 암호화(종단간 암호화)하여 전송 과정에서 보안을 강화
- 검증된 애플의 서버(PCC 노드)만이 암호화된 정보를 해독할 수 있으며, 애플 내부의 다른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암호화된 정보에 접근이 불가
- (독립적인 검증) 또한 독립적인 전문가가 서버에서 실행되는 코드를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애플의 개인정보보호 관행에 대한 신뢰를 강화
- 기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전체 프로덕션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제공하지 않으며, 제공한다 하더라도 연구자가 실제로 검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음
- 애플은 PCC 출시 후 보안 연구를 위한 모든 프로덕션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공개하여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연구자들이 애플 기기에서와 마찬가지로 PCC 소프트웨어 검사, 기능 확인, 문제 식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함
- (개인정보 최소화) 애플은 서버에 데이터를 보관하지 않고 사용자 기기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노출되거나 손상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양을 최소화

Systemwide experiences **Apple Intelligence** Writing Tools Image Playground Apps and experiences Server models On-device models Personal Intelligence App Intents Toolbox System Semantic index On-device intelligence stack Private Cloud Compute GPU Neural Engine GPU Neural Engine Apple silicon On-device Apple silicon servers

그림2 애플 인텔리전스 작동 구조

출처: Apple Developer (2024)

(3) EU 규제(DMA)와의 충돌 및 애플의 대응

■ 애플은 디지털시장법(DMA)의 상호 운용성 요구 사항으로 인한 사용자 개인정보보호 위험 우려를

강조하며, EU에서 애플 인텔리전스의 출시 연기를 발표

- EU의 디지털시장법(이하 DMA)은 빅테크 플랫폼 서비스에서 발생한 정보를 외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운용성'을 요구
- DMA는 디지털 시장을 보다 공정하고 개방적으로 만들기 위한 법률로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요건을 부과
-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을 통제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가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하여 소비자를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가두지 못하도록 특정 상황에서 제3자가 게이트키퍼의 자체 서비스와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
 - * DMA는 디지털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위해 '게이트키퍼' 개념을 도입했으며, 이는 EU에서 3년 연속으로 ▲연 매출 75억 유로 이상 또는 시가총액 750억 유로 이상 ▲월 활성 이용자 4,500만 명 이상 및 연간 활성 비즈니스 이용자 1만 개 이상을 충족하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지칭. '23년 9월 EU 집행위원회는 6개의 빅테크 기업(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을 게이트키퍼로 지정
- 상호 운용성은 문자 메시지, 통화, 음성 메시지, 이미지 및 비디오 공유와 같은 주요 기능이 타사 통신사 및 경쟁사 기기에서도 작동해야 함을 의미하는데, 애플 인텔리전스가 애플 기기에만 제공된다는 점에서 DMA 규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애플은 DMA 규정을 준수하게 되면 높은 수준의 자사 보안정책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애플은 성명을 통해 DMA의 지침을 따르게 되면 '사용자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안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자사 제품의 무결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애플 인텔리전스를 포함한 아이폰 미러링(Mirroring), 쉐어플레이(SharePlay) 화면 공유 기능을 EU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하지만 'EU 고객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기 위해 유럽위원회와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
- 이와 같은 애플의 결정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애플과 게이트키퍼들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EU의 규칙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유럽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환영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취함

▮애플 인텔리전스의 EU 시장 출시 연기가 의도적인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도 존재

- 일부에서는 애플이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EU 시장 출시를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중시하는 빅테크 기업으로서의 브랜드 프로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
- 출시 연기 결정이 사용자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EU 규제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음

- 한편으로 규제 환경을 더 빨리 탐색할 수 있는 경쟁업체에게 잠재적으로 입지를 내줄 수 있는 위험을 높일 수 있으나 이는 애플에만 해당되는 위험은 아님
- 최근 메타와 구글을 비롯한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EU에서의 AI 서비스 출시를 연기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 메타는 '24년 7월, EU 규제로 향후 몇 달 안에 출시할 예정인 멀티모달 AI 모델의 EU 출시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구글의 경우도 '23년 6월 AI 챗봇 '바드(Bard)'의 유럽 출시를 미룬 바 있음

3. 결론

- 엄격한 규제로 인해 자사의 첫 번째 AI 기능의 EU 출시를 보류한 애플, AI 혁신과 규제 간 적절한 균형을 잡기 위한 행보에 관심
- 애플 인텔리전스는 애플이 첫 번째로 공개하는 생성 AI로서 애플 기기 사용자의 경험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폐쇄적인 생태계를 중시해온 이전과는 달리 현재 생성형 AI를 선도하고 있는 OpenAI와의 협력으로 자사의 운영체제와 기능을 고도화하는 전략을 채택
-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서비스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 애플이 시장을 주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계 1위 사업자인 OpenAI와의 협력이 불가피했다는 평가
- OpenAl 이외에도 추후 구글 및 앤트로픽과 계약을 맺고 자사 기기를 통해 Al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
- 한편, 애플이 사용자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중요성을 핵심 이념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타 기업의 AI 모델을 활용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
- 올해 말부터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통해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출시하겠다는 발표 이후,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의 상호 운용성 요구 준수에 대한 어려움을 이유로 연내 EU 시장의 출시를 보류
- 애플은 DMA의 상호 운용성 지침 준수가 '사용자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안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자사 제품의 무결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
- 이에 관해 애플은 적절한 솔루션을 찾기 위해 규제 당국과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향후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과 규제 간 균형을 찾게될 것인지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출시 연기 결정이 사용자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EU 규제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시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 존재
- 애플 외에도 메타와 구글과 같이 AI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규제를 문제로 EU 지역 출시를 연기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EU 사용자들의 반발과 관련 산업의

혁신 저하 우려 속에서 규제 당국이 엄격한 규제를 지속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커질 것으로 예상

출처 🏻

- 1. AINEWS, Apple's EU AI delay: Innovation vs regulation, 2024.06.24.
- 2. AI타임스, 애플, 유럽서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 연기···EU 기술 규정 비난, 2024.06.22.
- 3. Apple Developer, Platforms State of the Union, 2024.
- 4. Apple Newsroom, Introducing Apple Intelligence, the personal intelligence system that puts powerful generative models at the core of iPhone, iPad, and Mac, 2024.6.10.
- 5. Apple Security Research Blog, Private Cloud Compute: A new frontier for Al privacy in the cloud, 2024.06.10.
- ARSTECHNICA, 96% of US users opt out of app tracking in iOS 14.5, analytics find, 2021.08.05.
- 7. Computerworld, EU commissioner slams Apple Intelligence delay, 2024.06.28.
- 8. Forbes, Apple's New Al Security Move Explained, 2024.06.22.
- 9. Matteo Sorci, Apple Intelligence: the Al for the rest of us, 2024.6.11.
- 10. NEWS18, Not Just ChatGPT, Apple Could Bring Gemini Al To iPhones With iOS 18 Update, 2024.07.06.
- 11. PRESCOUTER, Apple Intelligence: New AI features coming to iPhone, iPad & Mac, 2024.07.
- 12. The Guardian, How Apple plans to usher in 'new privacy standards' with its long-awaited Al, 2024.06.13.
- 13. The New York Times, Apple's Go-Slow A.I. Approach, 2024.06.11.
- 14. The Verge, Apple may delay AI features in the EU because of its big tech law, 2024.06.22.
- 15. The Verge, Here's how Apple's Al model tries to keep your data private, 2024.06.13.
- 16. 국민일보, 폐쇄적 생태계 고수하던 애플, 빅테크 경쟁사에 손 뻗는 까닭, 2024.06.25.
- 17. 보안뉴스, 논란 속 아이폰 15 판매중...'개인정보 보호, 애플이니까' 강력한 슬로건 내걸었다, 2023.11.31.
- 18. 어거스트, AI? 아니, Apple Intelligence, 2024.6.18.
- 19. 헤럴드경제. "애플. 구글 AI 모델 제미나이 자사 제품 탑재 9월 발표". 2024.07.05.



GDPR. 감독기관

EU 기본권청, DPA의 GDPR 집행 이슈 및 모범사례 공개



[목 차]

- 1. 개요
- 2. 이슈 1 DPA의 독립성
 - (1) 자원 독립성
 - (2) 집행 독립성
- 3. 이슈 2 DPA의 감독역량
 - (1) 조사 수행 능력
 - (2) 민원 처리 역량
- 4. 이슈 3 DPA의 자문역량
 - (1) 대중 자문
 - (2) 컨트롤러 자문
 - (3) 입법 자문
- 5. 이슈 4 EDPB와의 협력
- 6. EU FRA 결론 및 시사점
- 1. 개요
- EU 기본권청(EU FRA, EU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이 GDPR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감독기관(DPA, Data Protection Authority)들이 직면하는 주요 과제들을 강조
- GDPR 제97조는 EU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가 4년 주기로 GDPR을 검토·평가하는 보고서를 유럽의회 및 각료 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규정¹⁾

^{1) &}quot;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5월 25일까지, 그리고 이후 매 4년마다. 본 규정의 평가 및 검토에 관한 보고서를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공개되어야 한다(By 25 May 2020 and every four years thereafter, the Commission shall submit a report on the evaluation and review of this Regulat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o the Council. The reports shall be made public)." (GDPR 제97조제1항)

- '20년 6월 EC는 첫 번째 보고서("Your Rights Matter: Data Protection and Privacy")를 발간했으며, GDPR 시행 이후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높아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²⁾
- '24년 두 번째 보고서 발간을 위해 EC는 EU FRA에 DPA들이 GDPR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경험, 직면한 과제 및 사례의 조사·분석을 의뢰
- FRA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GDPR을 이행할 때 DPA가 직면한 과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네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접근
 - (독립성) 독립성 유지와 관련하여 DPA가 받는 자원의 적절성과 외부 영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식별
- (감독, 자문) DPA의 주된 역할인 감독·자문 권한을 검토
- (협력) 다른 국가 규제기관들 및 다른 EU 회원국 DPA, EU 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 와의 협력 관계에 대해 살펴봄
- 특히 직면한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DPA들이 마련한 해결책 및 모범사례들을 식별하고자 함

▮'22년 6월~'23년 6월 기간동안 EU FRA는 EU 27개국 DPA들과 총 70건의 인터뷰를 진행

- 다양한 관점의 확보를 위해 회원국마다 세 번의 인터뷰 진행을 목표로 했으며, 주요 인터뷰 대상은 다음과 같음
 - DPA 기관장(커미셔너, 의장 등)
 - 국내·국제협력 업무 담당자
 - 민원 처리, 조사 및/또는 제재 업무 담당자
- 인터뷰 질문지는 다음과 같은 9개 주제를 다룸
- ① DPA의 기관역량 ② 현대의 기술적 과제 ③ DPA의 독립성 ④ 대중의 인식 제고 ⑤ DPA의 조사 권한 ⑥ GDPR 위반에 대한 제재 ⑦ EU DPA 간 협력 ⑧ GDPR 일관성 메커니즘 및 EDPB와의 협력 ⑨ 다른 국가 규제기관과의 협력 ⑩ 개인정보 및 기타 기본권 보호
- 조사 결과, 개인정보 감독기관들은 공통으로 수많은 민원, 부족한 인적·재정적 자원, 업무량 등을 주된 어려움으로 언급
 - 이러한 현상은 AI 법 및 EU 국경 관리 시스템과 같은 신규 EU 법률 제정으로 인해 더욱 악화하는 양상을 보임

²⁾ 해당 보고서 설문조사에 의하면, EU의 27개 회원국 국민의 69%가 GDPR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

2. 이슈 1 - DPA의 독립성

(1) 자원 독립성

■ (예산) GDPR 시행 후 대부분의 DPA 예산이 증가했으나, GDPR 제57조 내지 제58조에서 규정한 모든 업무와 권한을 수행하기에는 부족

- GDPR 시행을 기점으로 EEA 전역의 DPA 인력이 42%, 예산이 49% 증가했으나, '23년 EU 개인정보보호위원회(EDPB) 자료에 의하면 20개의 DPA가 자원이 불충분하다 응답³⁾
 - DPA들이 주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급증하는 민원과 개인정보 침해 통지 처리 ▲복잡한 개인정보 처리 기술 모니터링 ▲새로운 EU 법률에 따른 추가 업무 수행 등이나, 지금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
- 특히 신기술 조사 및 감독에 필요한 기술 장비 부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일부 DPA는 디지털화, 데이터베이스 개선, 현장 조사 장비 구매 등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부 국가에서는 DPA 자원 적정성 평가를 위한 국가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고 제안
- (네덜란드) 법무부는 세 건의 연구과제를 통해 네덜란드 DPA가 직면한 재정적 어려움을 확인
- (리투아니아) '21년 법무부 직원 감사를 통해 DPA가 GDPR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두 배 증원해야 한다는 사실 밝힘

【(인력) GDPR은 DPA에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고 전담 직원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EDPB 자료에 따르면 '23년 기준 회원국 27곳 중 23곳이 DPA 인력 부족을 호소
 - 낮은 보수 및 열악한 근무조건, 국가별 채용 규정 등으로 인해 경쟁력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 ICT 계열 전문가들의 민간 부문 이직 경향이 높음
- 특히 일반 공공 행정 경쟁 채용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및 ICT 전문성을 갖춘 인력 채용이 어렵다고 언급했으며, 법률 전문성 부족은 DPA의 자문 기능 수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또한 업무량으로 인한 번아웃 및 DPA의 일관된 접근 방식을 유지하려는 데서 오는 어려움 등의 이슈가 존재
- 동 보고서는 각국 DPA들이 직면한 인적 자원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

³⁾ EDPB, "Contribution of the EDPB to the report on the application of the GDPR under Article 97", 2023. 33페이지 참고

- 덴마크의 Lean 관리 방식* 도입이나 스페인·포르투갈의 자동화된 절차 구현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고 있으며, 이로써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
- * 덴마크 DPA는 내부 업무 프로세스를 철저히 분석하고 최적화하여 불필요한 단계를 제거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이로써 절약된 시간과 자원을 더 중요한 예방적 활동에 투입⁴⁾
 - 또한 수수료, 기부금, 과징금 회수 등을 통한 추가 자금 확보하거나 EU 또는 외부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음
 - 이 외에도 직원들의 동기 부여를 위해 리투아니아 DPA처럼 관심 분야에 매칭하는 방안이나 국제협력 기회 제공, 핀란드와 같이 전문 분야별로 인력을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전략 등을 제안

(2) 집행 독립성

- (재정 통제) GDPR은 국내법에 의한 DPA의 재정 통제가 DPA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말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예산 편성 절차로 인해 DPA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영향 받을 수 있음
- 대부분의 회원국에서는 DPA가 매년 법무부 등 정부부처에 예산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음
- 담당 부처가 예산 지급을 지연시킬 경우, DPA의 계획된 사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한 예시로, 두 회원국의 DPA는 연간 예산 할당에 약 2년이 소요되었다고 응답
- 일부 회원국에서는 정치적 지원이 부족하여 DPA의 예산 할당이 적은 편
 - 회원국 4곳에서 DPA의 기능이 시간이 지나도 변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 증액이 거부당한 사례가 존재
-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낮은 인식과 오해로 인해 DPA의 역할과 기능이 정부로부터 과소 평가받는 경향이 있음
 - 일부 회원국의 재정당국은 GDPR이 기술 혁신을 방해하고 있다고 잘못 인식
- 한편, 스페인 DPA의 경우 연간 예산 제안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한 후 세무부와 협상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방식을 따르며, 이로써 재정적 독립성을 일정 수준 확보하고 있음
- (정부, 의회 및 기타 공공기관 통제) 대부분 국가에서는 DPA가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 중이나, 일부 국가에서는 DPA가 행정부나 입법부의 간접적 영향을 받음
- 일부 국가에서는 기술 개발 및 활용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DPA의 조언을 정부가

⁴⁾ https://www.datatilsynet.dk/om-datatilsynet/sagsbehandlingstider 참고



수용하지 않는 경향이 확인

- 예컨대, 코로나19 확산 방지 추적 기술 설정 시 개인정보보호 안전조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DPA의 제언을 입법자들이 수용하지 않은 사례가 존재
- 이는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공공의 안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DPA의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음을 시사
- 법률 입법 과정에서도 DPA는 충분한 품질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데 있어 한계에 봉착
 - 한 회원국은 정부가 DPA에게 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 요청 시 검토 기간을 1~2일로 짧게 설정하거나, 동시에 여러 요청을 하여 DPA의 자문 능력을 저해한다 언급
 - 또 다른 사례에서는 정부가 법안에 대해 DPA와 상의하지 않거나 매우 늦은 단계에서만 상의하는 예도 있다고 밝힘
- 이에 일부 DPA는 DPA의 자문 역할이 손상회지 않도록 하고자 입법 워킹그룹(working group)에 전문가로서 적극 참여하기도 함
- 또한 입법자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조항을 채택할 때 DPA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회의 기록에 전문가 자문을 적절히 기록하도록 하는 사례도 있음

【(DPA 리더십 임명) DPA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는 DPA의 임원(리더십)이 외부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임

- GDPR 제53조는 각 회원국이 DPA 위원이 투명한 절차를 통해 임명되어야 함을 규정
- 인터뷰 결과 EU 내에서 DPA 임원 지명의 투명성 결함이 문제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일부 회원국은 DPA 임원 선정 과정이 매우 '정치적'임을 강조
- 특히 DPA가 한 정부부처 산하에 소속되어 있을 때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존재
- 한 응답자는 예컨대 법무부가 DPA의 전체 예산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 DPA가 법무부의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해 행정처분을 부과했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DPA 임원의 EDPB 회의 참석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

3. 이슈 2 - DPA의 감독역량

(1) 조사 수행 능력

【(이슈) DPA들은 조사 과정에서 조사 기술의 다양성 부족, 조사 범위의 제한, 컨트롤러의 협조

부족 등 어려움에 직면

- 특히 적절한 재정적, 인적, 기술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효과적인 조사 업무 수행이 어려우며, GDPR 제58조에서 구체적인 조사 기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실무적 적용에 한계가 있음 ※ 특히 온라인 플랫폼, 앱, 소셜 네트워크의 경우 이러한 어려움이 더욱 부각된다고 언급
- ▲현장 조사 확대를 위한 예산 부족(재정적 자원) ▲IT 전문가 고용 능력 부족(인적 자원) ▲하드웨어 및 전자기기 조사를 위한 특수 소프트웨어 투자 능력 부족(기술적 자원) 등이 언급
- 예컨대, 일부 DPA들은 GDPR이나 국내법이 가명 검색, 클라이언트 명의로 컴퓨터 사이트 조회, 은닉 신분으로 구매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사 도구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
- 아울러 증거 인정 문제와 위반 사항 입증을 위한 정보 수집 범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부족한 것 또한 DPA의 애로사항 중 하나임
- DPA들은 국내 및 국경 간 사건(cross-border cases) 조사 범위가 너무 좁게 제한되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특히 각국의 규제 차이로 인해 더욱 복잡해지고 있음
- 또한 조사 과정에서 DPA가 컨트롤러에게 위반 행위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할 경우, 컨트롤러가 문제가 되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은폐할 가능성이 존재
- 다만 GDPR에서 DPA가 비협조적인 컨트롤러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충분한 제재 수단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관련 문서 접근이나 기밀 정보 평가 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조사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되곤 함

【(개선안) DPA의 조사 수행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모범 사례를 소개

- 포르투갈에서는 조사 전 예비 작업을 통해 관련 이슈를 점검하고 증거를 수집한 후,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마련
 - 조사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이러한 사전 통보 여부를 결정하지만, 대개 조사 대상에게 날짜와 시간, 필요한 인력 및 정책에 대해 미리 알림으로써 협력을 강화하고 절차를 신속하게 하기 위함
- 벨기에의 경우 법률로⁵⁾ DPA의 중재 권한(amicable settlements and mediation)을 보장하고 있어 '22년에 139건의 중재 사례를 처리한 바 있음
- 이 방식은 조사 기간을 단축시키고 신속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한편, 국경 간 사건 처리 시 국가 간의 규제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

⁵⁾ 벨기에 개인정보 감독기관 설립 근거법 참고 (https://www.autoriteprotectiondonnees.be/publications/loi-organique-de-l-apd.pdf)

(2) 민원 처리 역량

■ (이슈)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다량의 민원으로 인해 GDPR 집행 감독 능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일부 DPA는 인적/기술적 자원 부족 현상을 보완하고자 타 부서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러한 자원 부족으로 인해 전국적인 조사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는 DPA도 존재
 - 이에 공증인에게 현장 조사를 요청한 DPA도 있었으나. 이는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간주
- GDPR에서는 제62조에서 감독기관 간의 공동 작업(joint operation) 프레임워크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협력 방식은 거의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 '18년부터 '23년 사이 EU에서 단 5건의 공동 작업만이 이루어짐
 - 이같이 DPA 간 공동 작업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주된 사유로는 ▲EU 전역의 행정 규칙 및 절차의 조화 부족 ▲인적·재정적 자원의 부족 ▲고용 관계와 보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의 부재 ▲언어 장벽 ▲DPA 간의 자원 불균형 ▲공식적인 협력 방식의 비효율성 등이 언급
 - 특히 공식적인 요구사항과 GDPR 해석의 차이로 인해 긴급한 국경 간 사례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지연되는 점이 비효율적이라 강조

【(개선안) 이러한 민원 처리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DPA 간의 비공식적 협력 방식이 더 나은 결과를 더욱 신속하게 도출할 수 있다는 의견 또한 제시

- 일부 DPA들은 유사한 주제의 민원들을 그룹화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
 - 특정 이슈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되면 이를 '중요 주제'로 지정하고, 관련 자료와 가이드라인을 먼저 업데이트한 후 해당 민원들을 일괄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는 자원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가능하게 함
 - 이 외에도 과거 민원 데이터를 분석하여 미래 민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이터 기반 접근법을 사용한 사례도 있음
- '22년에는 네덜란드, 프랑스, 리투아니아, 폴란드의 DPA들이 EDPB의 지원 하에 공동 작업그룹을 구성하여 중고 거래 플랫폼 vinted.com의 GDPR 준수 여부를 조사했으며, 이 협력 모델의 효과성을 인정받아 EDPB는 향후 유사한 국경 간 조사에 이 방식을 활용하기로 결정
- 또한 같은 해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DPA들은 행정 부담을 줄이고 일관된 감독을 위해 전기 스쿠터 등 공유 모빌리티의 개인정보 처리 준수 여부에 대한 공동 감독을 실시하여 해당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권고안을 마련

- 해당 국가들의 경우 유사한 문화와 규제 체계로 인해 협력이 수월했던 점이 확인

4. 이슈 3 - DPA의 자문역량

(1) 대중 자문

【(이슈) GDPR 시행 이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으나 이해도는 여전히 부족

- 여러 회원국에서 공통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대폭 증가하고, 이로 인한 민원 접수도 급격하게 증가한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음
 - 그러나 DPA에 접수된 민원 중 상당수는 사소하거나 명확한 근거가 없었으며,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인 디지털 환경에서의 민감정보 처리나 개인정보 남·오용 관련 민원은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
 - 즉, 대중들은 본인에게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으나,
 그 권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는 아직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해석
- DPA들은 대중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식 제고를 위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으나, 자원 부족으로 인해 개별 민원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절한 자문을 제공하는 데 한계
- 일부 DPA는 공식 민원 제기 전 불만 사항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핫라인을 설치했으나, 이 또한 추가적인 인적·재정적 자원이 필요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개선안) DPA 직원들 간의 업무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민원과 특정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정기적·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추천

• 민원 데이터베이스 또는 레파지토리(repository)에 표준 답변 목록 및 모범 민원 해결 사례를 소개하고 Q&A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음

(2) 컨트롤러 자문

- 【이슈) GDPR의 올바른 이행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처리 관행 조사 시 DPA의 업무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컨트롤러에 대한 지침 제공이 중요
-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DPIA)와 관련하여 컨트롤러가 DPA에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드물어, 부적절한 개인정보 처리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함

- DPA가 현장 방문 없이 처리 작업의 잠재적인 위험을 평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존재
- 또한, DPA의 자문 역할과 조사 역할 사이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어, 일반적인 조언만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
- 특히 일부 회원국에서는 공공기관의 위반 혐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고 권고만 할 수 있어. DPA의 자문 역할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
 - 응답자들은 공공기관들은 DPA의 의견을 신뢰하지 않거나 부정적 피드백에 대한 우려로 사전 협의 없이 개인정보 처리 작업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 DPA와의 효과적인 협력과 소통의 부재로 인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고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언급

■ (개선안) 응답자들은 DPA가 자문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기술 발전에 발맞춰나가는 혁신적인 사례로 정보 서신과 규제 샌드박스를 언급

- 스웨덴 DPA는 정보 서신(information letter)을 보내는 방식으로 민원 당사자들에게 GDPR의 법적 의무사항을 설명
 - 이와 같이 타게팅된 분야별 지침은 조직 내 책임자들이 자발적으로 GDPR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
- 또한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술 자체에 대한 대량의 정보 입수를 가능하게 함
 - * 혁신적인 기술을 통제된 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 예컨대, EU 집행위원회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AI 기술과 같은 신기술의 알고리즘 구조와 개인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로써 더욱 효과적인 규제와 지침 개발이 가능해짐

(3) 입법 자문

【(이슈) 구속력이 없는 DPA 권고사항은 입법자에 의해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DPA는 입법 자문 제공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
- ▲개인정보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한 정부의 비적극적인 협의 요청 ▲불충분한 자문 제공 기한 ▲DPA가 기술 혁신을 방해한다는 오해 ▲개인정보보호의 위험성에 대한 정부의 이해 부족

■ (개선안) 인터뷰 응답자들은 DPA들이 입법 과정에서 직면하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

- 정부부처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여 법안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공식적인 요청이 없더라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 자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제안
 - 이같이 DPA가 입법과정에 선제적 행동을 취함으로써 법안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우려 사항을 반영할 수 있음
- 또한 법무부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법안 검토 과정에서 DPA의 조언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정부부처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법안 마련 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
 - 이 외에도 부처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시행하여, 법안 작성 시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더 잘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함

5. 이슈 4 - EDPB와의 협력

【(이슈) EDPB에 대한 DPA들의 전반적인 평은 긍정적이나, 가이드라인의 실용성 부족, 내부 관료 주의 및 DPA간 역량 차이 등이 과제로 언급

- 대다수 응답자들은 EDPB 가이드라인들이 대체로 업무와 인식 제고 활동을 모두 지원하는 점에서 유용하다 평가
- 다만, 일부 가이드라인은 너무 이론적이고 광범위하게 작성되어, 법적 교육이 없는 청중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 또한 EDPB 관련 업무로 인해 DPA의 추가 업무가 상당하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국가들도 있었음
 - 특히 DPA 간 역량 차이로 인한 감독기관 간의 협력 한계가 언급되었음
- 일부 인터뷰 응답자는 EDPB에서 비슷한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최대 400번의 회의를 거쳤다고 언급하는 등, 위원회 내부의 관료주의가 절차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

【(개선안) 응답자들은 EDPB의 긍정적 영향을 더욱 증대시키기고 DPA들간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

• 현재 내부시장정보시스템(Internal Market Information System)의 사용자 친화성이

부족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며, EU 전역의 DPA 간 협력과 정보 교환을 위한 IT 플랫폼의 효율성 향상이 필요

• 아울러, 더 일관성 있는 사건 처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DPA들의 업무에 대한 통계 및 지표를 포함할 것을 제안

6. EU FRA 결론 및 시사점

■EU FRA는 본 보고서를 통해 GDPR 이행에 있어 EU 회원국 DPA들이 직면한 과제를 강조

- '10년과 '14년에 발표된 FRA 연구 결과와 비교했을 때 14년이 지난 현시점 DPA의 재정·인적 자원의 격차는 여전했지만, DPA가 담당하는 업무의 수는 증가한 것을 확인
 - FRA는 DPA들로부터 공통적으로 자원 부족, 연구 수행 역량 부족, 필요한 조사 도구의 부족을 확인
 - 또한, 최근 설립되었거나 소규모 회원국에 위치한 DPA가 일반적으로 재정, 인적, 기술적 자원 부족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점에 주목

【(이슈 1) DPA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충분한 자원과 독립성 보장이 필요

- 많은 DPA들이 재정 및 인적 자원이 부족하여 GDPR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데 한계를 언급
 - 이러한 제약은 민원 처리, 조사 수행, 대중과 기업의 인식 제고 능력에 영향을 미침
 - 재정적, 인적 제약 외에도 정교한 데이터 분석 도구와 같은 최신 데이터 보호 작업에 필요한 고급 기술 자원 또한 부족한 것으로 확인
 - 일부 DPA는 GDPR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필수적인 기관 자율성이 종종 정치적·재정적 압력에 의해 훼손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
- 이에 EU FRA는 EU 회원국이 DPA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 배치에 있어 충분하고 독립적인 자금과 자율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

【(이슈 2) 효과적인 조사 및 감독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절한 기술 및 도구 필요성 부각

- 대부분의 DPA가 많은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방법을 모색 중임
 - DPA들은 방대한 양의 민원 접수로 인한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DPA는 조사 및 지침 마련과 같은 주요 업무보다 단순 민원 처리를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 인력 부족으로 인해 DPA들은 직권 조사 실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잠복 조사 및 조사

범위 확장과 같은 정교한 조사 도구·기법이 부족함

- 특히 국경 간 사건 처리는 상당한 자원이 필요하지만, 많은 DPA가 이를 충분히 갖추지 못해 집행 조치에 지연과 비효율이 발생
- 이에 EU FRA는 EU 집행위원회가 DPA의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기술 도구 및 절차적 개선사항을 마련할 것을 촉구
- 또한, EDPB가 대량 민원 처리에 대한 국가별 실무 경험 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이슈 3) GDPR 시행 이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높아졌으나, 실제 이해도는 낮은 편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나, 깊은 이해도에 있어서 개인과 조직 간 상당한 격차가 존재
 - 아직 많은 사람들이 GDPR 하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혼란 발생
 - DPA에 접수되는 사소하거나 근거 없는 민원의 다수가 이를 증명
- 컨트롤러의 GDPR 이해 부족 또한 낮은 DPA 수행 빈도와 적은 사전 협의 요청을 통해 증명되고 있음
- EU FRA는 DPA가 GDPR에서 규정한 의무사항과 권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충분히 제고할 수 있도록 공교육 확대. 명확한 지침 제공. 자문 서비스 지원 등을 지원할 것을 제안

【(이슈 4) 신속한 GDPR의 집행과 DPA간 해석의 조화를 위해 협력 강화의 중요성이 조명

- DPA간 자원과 전문성의 격차로 인해 효과적인 협력에 어려움이 있음
- 일부 DPA는 공동 사업에 충분히 참여하기 어렵거나, EDPB의 이니셔티브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
-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FRA는 EU 전역에서 일관된 GDPR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DPA 간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EDPB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
- EU 기관들은 DPA가 이러한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적, 재정적 자원을 제공해야 함
- 또한. EDPB가 DPA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작업 절차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

▮한편, EU에서는 GDPR의 집행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조치*가 별도로 진행 중

- * Additional procedural rules relating to the enforcement of Regulation (EU) 2016/679
- '23년 7월, EU 집행위원회는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회원국 간 집행 절차적 차이를 해소하고자 동 법안을 제안

- 동 법안은 ▲표준화된 민원 양식의 도입 ▲조사 대상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DPA 간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분쟁 해결 절차의 기한 설정 등을 목표로 함
- '23년 9월, EDPB와 EDPS는 해당 법안에 대한 공동 의견서(Joint Opinion)을 통해 해당 법안을 환영한 한편. DPA의 자원 증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출처 🗆

- Datatilsynet, Sagsbehandlingstider, https://www.datatilsynet.dk/om-datatilsynet/sagsbehandlingstider
- 2. EDPB, Contribution of the EDPB to the report on the application of the GDPR under Article 97, 2023.
- 3. EDPB and EDPS, Joint Opinion 01/2023 on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additional procedural rules relating to the enforcement of Regulation (EU) 2016/679, 2023.
- 4. FRA, GDPR in practice Experiences of data protection authorities, 2024.6.11.

2024 개인정보보호 월간동향분석 발간 목록

No.	호수	제목
1	1월 1호	EU 데이터법(Data Act) 주요 내용 분석 및 시사점
2	1월 2호	EU 내 메타의 무광고 유료 서비스 모델의 개인정보 침해 이슈 분석
3	2월 1호	미국 주(州)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평가 및 분석
4	2월 2호	DPO 지정 및 역할에 대한 CEA 2023 조사 분석
5	3월 1호	미국 백악관의 정부 데이터 및 민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행정명령 분석
6	3월 2호	EDPB, GDPR 주 사업장에 관한 성명 발표
7	4월 1호	생체인식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이슈
8	4월 2호	미국 AI 에듀테크 시장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제 현황 및 고려사항
9	5월 1호	미국 APRA(American Privacy Rights Act) 주요 내용 분석
10	5월 2호	EDPS 2023 연례보고서 분석
11	6월 1호	중국-미국 간 데이터 관련 이슈
12	6월 2호	EU AI 법 및 GDPR의 상관관계 분석
13	7월 1호	애플의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 및 EU 규제 이슈
14	7월 2호	EU 기본권청, DPA의 GDPR 집행 이슈 및 모범사례 공개

2024 개인정보보호 월간동향분석

『2024 개인정보보호 월간동향분석 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연금으로 수행한 사업의 결과물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승인 없이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하며, 인용하실 때는 반드시 『2024 개인정보보호 월간동향 분석 보고서』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발행

발행일 2024년 8월

발행처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제도팀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Tel: 061-820-1231

2024 개인정보보호 월간동향분석

2024 Vol.7





